

안전조업의 길

동 해 어 업 무 선 국
국장 강 일 성

1. 머리말

1차 산업인 수산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다.

복과, 소련 및 중국 등 적성 국가와 인접되어 접적해역에서 어선 피난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해난사고, 각종 안전사고 등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동안 해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민 스스로 안전조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민 안전조업지도 교육을 통하여 익힌 기술과 지식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해난사고가 '80년도에 400척에서 '84년도에는 270척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다소의 피해를 입고 있다.

해난사고는 사전에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한다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육상의 어느 재해와는 달리 치명적인 재해가 되며 우선 선체자체의 침몰과 인명의 손실이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항행과 안전조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항포구를 출항하여 만선조업 후 귀항시까지 어민이 지켜야 할 제반사항 중 안전조업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가. 안전조업지도 교육이수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수협에서 실시하는 해상조업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선원에 대하여는 선장이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해역에 출어코자 하는 어선은 어로보호 본부장이 업종별로 성어기전에 실시하는 년 1회 2시간의 특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출항전 안전점검

특정해역, 조업자제해역 등 취약해역과 원해에 출어하는 어선은 반드시 출항전에 해도비치

및 수로고시에 의한 해도 수정여부, 나침의 무전기 등 항해장비 동작상태, 구명동의 비치여부, 항해등 및 각종 신호등(장등, 현등, 선미등, 정박등, 어업등)의 부착과 점등확인, 기타 어선장비의 비치 및 정상 작동여부를 정밀히 점검하고 기관고장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난사고 원인별 분석에 의하면 어선 노후에 따른 정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 출입항 신고

어선이 조업차 출입항코자 할 때에는 선원명부를 첨부한 어선 출입항 신고서를 출입항 신고기관(통제소, 합동신고소, 신고소, 대행신고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어선구비서류 확인증도 동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이나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를 출입항하여서

는 아니된다.

라. 출어등록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에 출어로자 할 때에는 통제소 또는 합동 신고소에 출어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어등록은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 면허 또는 신고된 어선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출어등록된 어선에 대하여는 출어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2. 어선단 조업

출어시에는 어선의 업종, 성능과 지역 및 선장간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해역과, 동해의 대화퇴 해역은 3척 이상, 조업자제해역 및 일반해역은 2척 이상으로 어선단을 편성, 동시에 출입항하고 가시거리내의 동일어장에서 조업하여야 하며 해난 발생시에는 서로 구조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조기만선, 일반 안전해역으로의 조업장소의 이동 및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단에서 이탈이 불가피한 때에는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 이탈할 수 있으며 기상 악화시를 제외하고 잔류어선이 1척일 때에는 다른 어선단에 편입한다.

가. 고시구역의 어로,

항해 금지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일정해역을 지정, 고시하였을 때 그 지정된 해역내에서는 항해 또는 어로작업이 금지된다.

또한 시·도지사가 당해 방위협의회와 협의·조정하여 고시한 해역내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어로 및 항해가 금지되므로 부득이 할 경우에는 긴급 출입항로를 이용하여 출입항하여야 한다.

나. 월선금지

모든 출어선은 어로한계선, 조업자제해역의 한계선과 성어기 어로허용선을 월선하여 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수산업법 제23조에 의한 원양어업 허가어선과 제11조에 의한 어업허가 어선중 수산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어선을 제외하고는 북위 25도 이남 해역과 동해는 동경 140도 이동, 태평양 해역은 동경 130도 이동의 해역에 출어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특정해역내의 어로제한

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신시설, 나침의, 해도, 구명동의, 조석표, 라디오 등 각종 장비를 갖춘 동력선 이어

야 한다.

다만, 특정해역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어민이 보유하는 무동력 어선 및 10톤 미만의 어선은 예외로 하되 닷과 노를 비치하여야 한다.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해에 있어서는 동경 131도 이동의 해역, 서해에 있어서는 동경 125도 이서의 해역에는 출어할 수 없으며 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은 울릉도 주위 60마일까지 출어할 수 있다.

3. 어업무선국의 가입

및 보고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선적항 또는 인근 관할 어업무선국에 교신 가입하고 가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정해역 출어선은 1일 3회 이상 지정 어업무선국(동해: 속초, 주문진, 동해, 울릉 어업무선국 서해: 인천어업무선국)에, 동해 대화퇴 해역 출어선은 1일 3회 이상,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에 있어서 삼척항 북단에서 북위 37도 27분, 동경 130도 30분에 이르는 선과 북위 38도 15분선 내의 10톤 미만 어선을 제외한 일반해역 출어선, 대형트롤어선, 서해 북위 36도 이북해역의 10톤 이상 출어선 및 동해 북위 36도 30분 이남, 동경 128도 이동해역의 장어통발 어선은 1일 2회 이상, 기타 일반해역 출어선은 1일 1회 이상 출항지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어선단 조업을 할 때에는 선

단장선이 소속 선단선의 위치를 일괄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지정 어업무선국 또는 출항지 어업무선국과 교신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근 어업무선국에 중계 보고토록 의뢰하여야 하며 어선단을 이탈하여 단독 귀항하는 어선은 4 시간마다 그 위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식별신호 이행

어선은 신호기·신호등(信號燈) 기타 필요한 장구를 비치하고 항해 또는 조업 중 규정된 식별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나. 의아선박 발견보고

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 중 의심스러운 선박 또는 물체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일시, 위치, 승선자, 항행 방향, 항해 목적 등 발견 당시의 관찰사항을 구체적으로 경비함정, 어업지도선 또는 인근 어업무선국에 긴급 보고하고 선장은 가능한 한 의아선박의 행동을 계속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통신기가 없는 선박의 선장은

통신기가 있는 선박에게 발견보고를 의뢰하여야 하며 발견보고를 할 수 없을 때는 귀항하는 선박의 선장에게 보고를 의뢰하거나 귀항 즉시 인근 경찰관서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경보청취 의무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매시 정각부터 3분간씩 통신기를 개방하여 긴급사태 경보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여야 하며 라디오를 비치한 선박은 매 뉴우스 시간마다 긴급사태의 경보에 관한 뉴우스를 청취하여야 한다.

라. 위험 및 대피신호에 대한 대비

선장은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주간에는 기적장음 5회 이상, 야간에는 발광신호 단부호 10회 이상의 위험 또는 대피신호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이에 대비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통신기가 설치된 선박은 대피상황을 자체없이 어업무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어 또는 조업 중 경비함정,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정선명령 신호를 받은 때나 우리나라 항공기가 어선의 상공에서 선회하거나 조명탄을 투하할 때에는 즉시 정선하고 정하여진 신호로 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4. 맷 음 말

어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는 어로장비를 현대화하여 만선조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업경영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안전조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최근 각종 해난사고는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치명적인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안전조업에 관한 제반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해난사고의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여야 하겠다.

— 어선검사 신청시준비 —

- 어선검사증서, 수첩, 기록부
- 인장 및 검사수수료
(검사신청은 어선협회에서 무료대서 제공함)

- 검사신청은 어선협회 어떤 지부, 출장소, 분소에서도 신청접수함.
- 수협 및 어촌계를 통한 검사신청 또는 순회검사 시 현지신청도 접수함.